

의안번호	2201520
의 퇴 인	김문수의원
회 답 일	2024.08.09.
추계번호	24C1902

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·시행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-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 (학비등의 지원)	-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그 밖에 실습비·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지출
3	안 제12조 (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)	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,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지출
4	안 제14조 (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부속병원)	의과대학이 없는 국립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우 해당 국립대학에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부속병원을 설립함(제1항)	의무지출

1)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「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」에서 「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 (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· 시행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2	안 제7조 (학비등의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2조 (공공보건의료인력 에 대한 지원)	
4	안 제14조 (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 부 속병원)	○ 기시행으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□ (안 제4조) 개정안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, 계획수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이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- 보건복지부 유사사례인 “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(2021)”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준용할 경우, 추계 첫해인 2025년에 연구용역비 1억 4,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□ (안 제14조) 개정안은 의과대학이 없는 국립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우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, 현재 모든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부속병원이 설치되어 있고, 안 제5조에서도 의과대학이 있는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
- 참고로, 17개 시·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남도 두 곳임

2. 상세 사유

□ 학비등의 지원(안 제7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학생에게 입학비와 실습비, 기숙사비 등(이하 “학비등”)을 지원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학비등을 보조할 대상자 규모, 지원 종류 및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
 - 개정안 제5조제4항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상의 지정 요건 및 학생 정원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지원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정부는 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」(2024.02.01.) 발표를 통해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, 구체적인 안은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될 계획임
 - 한편, 보건복지부는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10조에 따른 ‘공공·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’ 사업에서 필수의료분야 진출 의대생의 실습과 연구지원비로 2024년 기준 17억 6,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, ‘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’ 사업을 통해 장학생 120명에 대해 연간 장학금(1,730만원)의 50%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10억 3,800만 원을 배정함

[표 1]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

구분	상세내용
지역의료리더 육성제	○ 대학-지자체-학생 3자 계약 下 ‘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’ 선택 시 장학금·수련비용 지원 + 교수 채용 할당 + 定住 지원 → 일정 기간 지역 근무
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	○ 충분한 수입 + 定住 여건(교육, 주거 등 지자체 지원)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- 지자체·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배정, 지역의료 재정지원, 시범사업 등 연계

자료: 보건복지부 「필수의료 정책 패키지」(2024.02.01.)

□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(안 제12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 중인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, 경력개발 지원 등을 지원 할 경우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량적·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